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예고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6. 10.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나. 비용의 지원(안 제4조)

다. 예방교육(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0. ~ 6. 15.(5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p>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4년 6월 일</p> <p>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p> <p>담양군의회 의장 귀하</p>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사.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 등)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기·화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